

---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 1. .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년 12월 22일  
민경환의원외 20인
-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13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 1. 26)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경환 의원)

##### 1. 제안이유

지역간 재정격차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하고, 그간의 행정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설

- (1)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안 제6조)
- (2) 보조금의 예산요구(안 제7조)
- (3)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안 제8조)
- (4) 보조금 예산의 통지(안 제10조)
- (5) 의무부담(안 제11조)
- (6) 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안 제13조)

나.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안 제9조)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 가. 배경 및 주요내용

현행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된 행정 및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안 제9조의 차등보조율제도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음.

개정조례안중 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 보조대상, 안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안 제16조 교부방법, 안 제17조 사정 변경에 의

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안 제18조 용도의 사용금지, 안 제19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안 제2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안 제21조 사업비 정산검사, 안 제22조 감독, 안 제24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는 내용에 변동이 없으며,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보조신청, 안 제14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안 제1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안 제23조 보조사업수행사항 보고는 부분삭제 또는 추가삽입을 통해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설한 내용으로는

- 안 제6조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 안 제7조 보조금의 예산요구
- 안 제8조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 안 제9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 안 제10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안 제11조 의무부담
- 안 제13조 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
- 안 제25조 시행규칙으로 8개 조문이 신설되었음

이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됨.

## 나. 차등보조율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하보조율을,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sup>1)</sup> 적용에 대하여는 보조금은 재정격차 완화의 목적보다는 일정한 행정수준 유지를 위해 특정사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보조금보다는 지방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보전금과 같은 지방재정지원제도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재정력이 낮아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특정 보조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보조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차등보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시·도비보조금<sup>2)</sup>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다.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안 제8조)과 차등보조율 적용산식(별표)에 대한 검토의견

안 제8조에서 시·군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따로

1) 중앙정부에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10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다가 1994년 이후 중단된 바 있음.

2)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기준부담률을 정하고 있는 동 규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의 차등보조율 적용산식중 재정자주도 산식에는 도에서 교부하여 시·군에서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재정보전금을 삽입하여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함.

## [참고자료 I]

보조금 현황 및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비보조금				재정자립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합 계	64,186	100.0	52,942	100.0	-	-
청주시	7,288	11.4	7,040	13.3	47.4	48.1
충주시	7,045	11.0	6,061	11.4	20.7	20.8
제천시	7,291	11.4	5,272	10.0	20.6	20.0
청원군	7,671	12.0	6,558	12.4	28.1	30.1
보은군	5,825	9.1	4,129	7.8	9.8	11.8
옥천군	5,293	8.2	3,703	7.0	13.9	15.4
영동군	4,388	6.8	5,163	9.7	13.3	15.3
증평군	1,556	2.4	1,455	2.7	11.6	17.0
진천군	3,421	5.3	4,532	8.6	27.0	28.6
괴산군	5,316	8.3	3,059	5.8	14.4	12.4
음성군	6,116	9.5	4,138	7.8	21.6	24.8
단양군	2,976	4.6	1,832	3.5	19.4	20.9

자료) 예산담당관실

## [참고자료 2]

### 주요재정지표 산출방식

각종지표	산출방식	비고
재정자립도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재정자주도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보통교부세+재정보전금
경상비 비율	$\frac{\text{경상예산}}{\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경상예산=인건비 +경상적경비
투자비 비율	$\frac{\text{사업예산}}{\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
예비비확보율	$\frac{\text{예비비}}{\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주민 1인당 자치수입액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인구수}} \times 100$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frac{\text{지방세액}}{\text{인구수}} \times 100$	
자체수입대 인건비비교	$\frac{\text{지방세액}}{\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times 100$	

자료) 행정자치부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 요지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1. 26(제25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장

2. 수정이유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중 재정자주도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고자함.

3. 수정주요내용

가.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삭제(안 제8조제1항).

나. 재정자주도 산식에 “재정보전금”을 삽입하여 산식의 오류 시정(별표).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7. 1. 29.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수정이유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중 재정자주도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고자함.

### 수정주요내용

1.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안에서 사업별료” 삭제(안 제8조제1항).
2. 재정자주도 산식에 “재정보전금”을 삽입하여 산식의 오류 시정(별표).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중 재정자주도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text{- 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 ̄뎡통교부세}}{\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보조금”이라 함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생략)</p> <p>제4조(보조대상) <u>도지사</u>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 ----- ----- ----- ----- ----- -----</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보조대상)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개 정 안	수 정 안
<p>3. (생략)</p> <p>제8조(시·군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별표]</p> <p>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p> $- \text{재정자주도}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text{보통교부세}}{\text{일반회계예산규모}} \times 100$	<p>3.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시·군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p> <p>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p> $- \text{재정자주도}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text{재정보전금} + \text{보통교부세}}{\text{일반회계예산규모}} \times 100$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7조(보조금의 예산요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사업내역 및 금액을 검토 조정하여 정책관리실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시·군에 대한 보조금

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은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산출한 산식에 따라 별표와 같다.

제10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부담)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 시·군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제출되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보조사업자(법인·단체 및 개인에 한한다)의 신용도 및 자부담능력 등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수시·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

을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 정산검사) ①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2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1.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산식에 의거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단,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적용 비율은 50:50으로 한다)

**차등보조율 적용산식**

해당 시·군 재정자립도	+	해당 시·군 재정자주도	×	1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		시·군 재정자주도 평균		2

주1)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산식

$$-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 수입(지방세 제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준금+보통교부세}}{\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주2)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산식에 필요한 지수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연도의 예산상 지수를 사용하되, 당해연도 당초 예산상의 지수를 전년도는 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평균한 수치를 사용한다.

2. 차등보조율

가. 인상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10%, 5%)을 가산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거 지원(보조)한다.

(적용보조율 = 기준보조율 + 차등보조 적용 비율)

나. 인하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10%, 5%)을 각각 차감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거 지원(보조)한다.

(적용보조율 = 기준보조율 - 차등보조 적용비율)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및 교부 결정액
  - 보조사업자 :
  - 교부 결정액 :
3. 보조사업 내용 :
4. 예산 과목 :
5. 보조 조건

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 관련법령발췌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